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12호 2019. 12. 27.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56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75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27

○ 정선군 조례 제2759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4

○ 정선군 조례 제276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정선군 조례 제2761호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43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 1334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4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6호

정선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기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활동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선군의회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서면 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정선군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정선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필요성	1 공무국외활동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활동자의 적합성	1. 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		
	3. 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활동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활동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활동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개 요

활동목적							
활동동기 및 내용							
활동기간	. . . ~ . . .(일간)						
대상국가							
활 동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활동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활동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활동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0 보고서의 규격은 A4(210㎜ × 297㎜)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내외로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0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배경 및 활동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0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대상국가·활동목적·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활동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활동 개요

1. 여 행 국 :
2. 활동목적 :
3. 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활동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0 활동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0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0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 제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 개정 권고 ('19.02.11.)

□ 주요내용

○ 제3조(적용범위)

-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 교류, 지자체 장의 요청, 본회의 · 위원회 의결의 경우 등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 위촉
-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당사자인 경우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

○ 제5조(심사기준)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별표)를 마련하여 심사기준 구체화

○ 제8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 군의회 개회 중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활동 계획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
-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제9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 의원이 출국 30일전까지 활동계획서 위원회 제출 및 의결을 거친 후 3일 이내 정선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 제10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 의원이 귀국 후 30일 이내 활동보고서 작성
- 60일 이내 본회의 시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7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한자어 정비에 따른 개정

제1조(「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할”을 “회계처리 할”로 한다.

제2조(「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3조(「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한다.

제2장 호주제 정비에 따른 개정

제4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본적이”를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제3장 과태료 정비에 따른 개정

제5조(「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로 한다.

제7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1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8조(「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장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

제9조(「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

제11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 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정선군물품관리조례」의 개정)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1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다”를 “산림재해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로 한다.

제15조(「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계리의 원칙) ①-------- ---------- ---------- ---------- 회계처리--------. ②---------- --- 회계처리 할 ---------- ----------.

제2조(「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계리한다. ② (생 략)	제5조(예산의 계상) ①--------- ---------- ---------- ---------- 회계처리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출자) ① (생 략)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처리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상황----------.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정선군 향토민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상대상) 향토민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정선군인 자 또는 정선군 관내에 직장을 갖고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군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제3조(수상대상) ---------- 등록기준지가 ----------

타에 귀감이 되는 자로 하며,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현재 3년이내의 공적으로 한다.	----------.

제5조(「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19조(사전통지 등)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에 따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의2 (생 략)	제21조 (현행 제21조의2와 같음)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24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8조(「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	<삭 제>

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용료의 반환) <삭 제>

제10조(「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3. 제4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② (생 략) ③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 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	제17조(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 전 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정선군물품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

정선군수 귀하

읍.면에서의 검토사항

(담당 공무원 검 토 결 과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읍 . 면 장 추 천 의 견		○○○ 읍.면장 (서명)

주1) ⑦ 담당공무원 란은 관련공부 확인 및 거주사실 결과 기재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

정선군수 귀하

읍.면에서의 검토사항

(담당 공무원 검 토 결 과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읍 . 면 장 추 천 의 견		○○○ 읍.면장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4조(「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간사) 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이 된다.	제12조(간사) ① ---------- 산림재해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 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① 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등록기준지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직업	
②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③ 정선군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년, 월)					
④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⑤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⑥ 배우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서 1부

정선군수 귀하

읍.면에서의 검토사항

⑦ 담당공무원 검토결과	검토내용 및 일자기재	직.성명 : (서명)
⑧ 읍.면장 추천의견		○○○ 읍.면장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규정,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자어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제1조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기획실
제2조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상하수도사업소
제3조	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	상하수도사업소

나. 호주제 관련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제4조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행정과

다. 과태료 규정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제5조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환경과
제6조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환경과
제7조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환경과
제8조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사업소

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제9조	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	환경과
제10조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	건설과

마.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제11조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과
제12조	정선군물품관리조례	회계과
제13조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청소년과
제14조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산림과
제15조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도시과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8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을 "제1호라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급별로영"을 "계급별로 영"으로 한다.
제4조 중 "할때"를 "할 때"로, "별표1"을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8조의 2는"을 "영 제8조의2제5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 로 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제1호라목을 ----------. ②----------계급별로 영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할 때 ---------- 별표 2----------.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준용) ----------.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7조제1항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7조----------.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으로 한다.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제안이유

국내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고,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제2조)

나. 국내여비 기준의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 (제4조)

다.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제6조제1호)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59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호국보훈수당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1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3.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유족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5. 제1호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

	보훈의 달 및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를 따른다.

□ 제안이유

가. 법령의 포괄적 조문에 따라 지급한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보훈 관계법으로 예우하고 있는 유공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제9조)

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범위 확대 (제9조)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
제6조제4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 위문금품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④ ----------.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안이유

가. 법령의 포괄적 조문에 따라 지급한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사망위로금 청구 기간이 다른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사망위로금 청구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제4조)

나.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을 3년으로 함(제6조)

제258회 정선군의회(2019. 12. 18.)에서 의결된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61호

정선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거리·횟수 및 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운행)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

제4조(노선지정)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지정의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파업, 태업 등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 수급권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

5.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④ 제3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의 탑승 전에 내보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인정하거나 해당자에게 물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재원조성·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국가 및 강원도 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부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는 부령 제58조제3항의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및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사업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운행요금, 사업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운수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제8조)

마. 운수종사자 교육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규 칙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2019.12.06.)에서 의결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 1334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장 한자어 정비에 따른 개정

제1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장부의 기장)”을 “(장부의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을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중 “기장한다”를 각각 “기록한다”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을 “(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을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장한다”를 “기록한다”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을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87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8조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기장·관리”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8조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한다.

제2장 과태료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

제3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 처분 통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으로,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기 전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징수에”를 “부과·징수에”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로 한다.

제3장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

제5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 ---------- 기록---------.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생 략)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기록----------.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 6. (생 략)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회계처리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생 략)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 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 기록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④---------- 기록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 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의 지출관련 절차 및 기록) ①---------- 기록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기록---------.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기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

출절차 및 기장) ①·② (생략)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부를 기장한다.	출절차 및 기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록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 ④ (생 략)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 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록 ----------.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① (생 략)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 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 --------. ③---------- 기록 ----------.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제87조(입고절차) ----------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관리 하여야 한다.	---------- 기록·관리 ----------.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 45호 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 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 기록·관리 ----------.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생략)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 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관리-------.
제97조(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 (생 략)	제97조(재고의 수정) ①---------- 기록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생 략)	제78조(회의의 질서유지) ----------. 1. ~ 3. (현행과 같음) 4. ---------- 흡연 5. (현행과 같음)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 3. (생 략)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 9. (생 략)	제8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1. ~ 3. (현행과 같음) 4. ---------- 흡연행위 5.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8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삭 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와 납부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현장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별지 제13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별지 제14호서 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	<삭 제>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 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 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	<삭 제>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수납부(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한다	<삭 제>

제4조(「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 ---------- 하기 전 당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부과·징수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제5조(「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 ----------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규정,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자어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안 제1조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상하수도사업소
안 제2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의회사무과

나. 과태료 규정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안 제3조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환경과
안 제4조	정선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건설과

다.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조문	조례명	부서
안 제5조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	상하수도사업소